

동두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의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의안 번호	4-91
----------	------

제출연월일 : 2003. 6.

제출자 : 동두천시장

1. 제안이유

○ 청소년분야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를 현실에 맞게 설치·운영함으로써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문제에 대처하고 건전한 청소년 보호·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함(안 3조 내지 제11조)

나. 지방청소년실무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정함 (안 제12조 내지 제15조)

다.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등에 관하여 정함 (안 제16조 내지 제22조)

라.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하여 정함 (안 제23조~제29조)

동두천시조례 제 호

동두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의설치및운영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지도를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동두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및 동두천시 지방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동두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를 말한다.
- 2."동두천시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 3."동두천시차세대위원회(이하"차세대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 4."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2장 지방청소년위원회

제3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동두천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시 교육장 및 경찰서장과 관계 행정기관공무원, 청소년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예술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등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5조(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년도별 시행계획 수립
2.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4. 청소년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5.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
3.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

제7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 순에 의한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제9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체육청소년과장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담당이 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11조(출석 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청소년실무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동두천시지방청소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체육청소년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학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자로 한다

④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정 또는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검토를 요하는 사항

2.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실무적인 협조사항
4. 기타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실무위원회의 간사) ①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청소년담당으로 한다.

제3장 청소년지도위원

제16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의 추천과 자원 참여 신청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3.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4. 기타 청소년 지도 및 선도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지도위원의 임무) ①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내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②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중에 지득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 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20인 이내로 하되 지역 여건(인구, 학교 소재등)을 참작하여 위촉한다.

제20조(지도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지도위원의 해촉사유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행정지원 등) 시장은 지도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증표 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지도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장 차세대위원회

제23조(차세대위원회)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차세대위원회를 둔다.

제24조(구성) ①차세대위원회의 위원은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중에서 학교장, 청소년 관련기관장 및 단체장이 추천한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재학중인 학생은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차세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차세대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5조(임기) ①차세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2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차세대위원회를 대표하며, 차세대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에는 부위원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에는 차세대위원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기능) 차세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 1.시 또는 다른기관,단체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의견제시
- 2.도 및 다른 시.군의 차세대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 3.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에 관한 의견제시
- 4.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안이나 운영
- 5.자체적인 봉사활동과 연수활동 전개
- 6.기타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28조(행정지원 등) 시장은 차세대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하여 각종 사업이나 연수활동 및 보상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회의) ①차세대위원회의 회의는 매분기 1회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보 칙

제30조(수당 등) 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동두천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과 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동두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중인 동두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 및 동두천시차세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당시 기 위촉되어 있는 각종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 (제21조 관련)

(앞 (단위 : cm))

5. 0.3

1 청소년지도위원증

①

② 0.75

③ 0.75

1 0.3

4 8. 1

(뒷면)

성 명:

주인등록번호: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④ 동두천시장 인

이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5. 7 1. 8

(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④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 ① 사진(4.9cm ×4cm)
- ② 청소년지도위원증의 번호
- ③ 성 명
- ④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